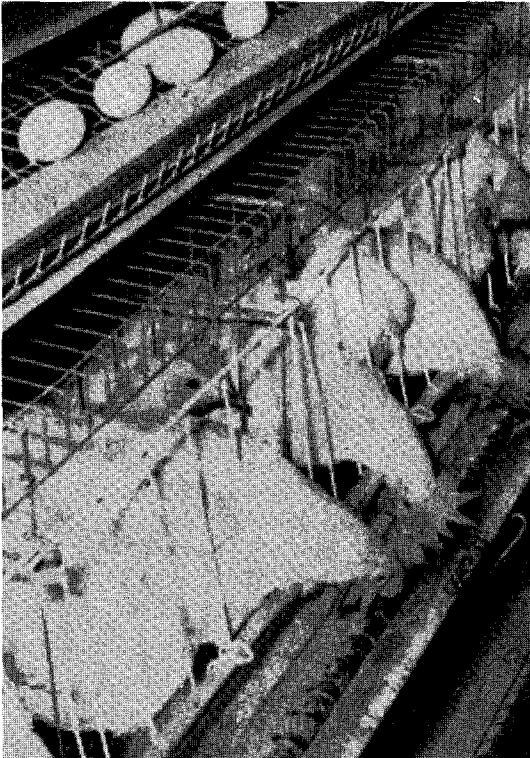


축산업의 허가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일정규모 이상)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양계산업은 닭의 생리적 특성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생산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게된다. 몇몇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계란이나 닭고기가 부족한 경우는 있지만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들이 쿼터제 혹은 허가제 등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줄여볼까 하는 데에 정책의 방향이 주어지고 있다.

지난해 군소 양돈업자들이 대기업의 양돈업계 참여에 대한 불만을 표면화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축산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일정규모에 이상에 대한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이루어진바 있다.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법이 운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되는 양축가들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긴 하나, 양축가를 위한 법이 양축가들의 충분한 이해 없이 집행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도 계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양계안정법을 개정하여 사육수수를 제한하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계안정법 골자에 대한 양축가들의 견해가 지역별 양계업자 회의를 통해서 수렴되고 있어 우리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현(縣)에서 있는 양계경영자 회의를 소개하여 이들이 양계산업 발전에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저란가 타개 및 농외자본 진출 저지 특별대책 위원회」가 구상한 양계안정법안은 각 계각층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종합되어 건전한 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현(縣)의 양계경영자회의는 양계농가의 자생, 자주적인 조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데(우리나라도 계우회 등이 도(道) 단위로 뭉치든가 아니면 양계협회 도지부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모임을 신문이나 잡

지를 통해서 전국의 양계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더욱 깊이, 더욱 많은 사람이 이 토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양계인에게 양계업계의 안정과 발전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농외자본을 배경으로 한 상사양계(商社養鷄)의 횡포적 진출은 최근에 와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계산업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저해하고 양계농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양계인들은 양계를 농업의 일부분으로 위치를 굳히고 농외 자본의 진출을 반대하며 미력하나마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번 양계 안정법의 입법화 움직임이 이법의 제정으로 활발해져 농외자본의 침투를 막고, 앞으로 양계농가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양계인은 적극 환영하고 이 법의 운용에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의논을 통해서 제정되었다 하여도 그 법을 지켜야 할 양계농가에서 손해가 되는 일은 없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양계안정법은 분명히 농외자본 진출이나 대규모 양계장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양계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중에는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양계산업은 그간 계속되어온 농외자본에 대항하느라 피나는 노력으로 원가절감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으며 끊임없는 경영개선의 노력과 양계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쌀과 쇠고기 처럼 정부의 따뜻한 보호가 없이도 이와 같이 훌륭하게 자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과잉생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경영권까지 정부에 맡기고 보호를 받으려는 처사는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재고되어야 한다. 본래 양계업이란 경영의 기본 결정권은 개인의 의사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입법화하여 허가제로 하고 더우기 별칙

조항까지 두어서 양계업자 상호간 동업자 기리 감시하며 의심과 암투속에서 양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법이란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어느 하나가 부족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족이 발견되면 죄는 면할 길이 없게 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다.

또 이와같은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게 운영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마리수를 고정하여 과연 양계업계 발전과 국민식생활의 안정공급이라는 사명을 어느정도 달성할 것인지도 문제이며 계란이 물가 안정의 왕으로 불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양계안정법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까지 현 상태로 동결하고 마리수의 확장을 못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규모의 확대를 고정시켜 놓았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도입도 못하고 작은 규모로 묶은 사람은 일생을 그대로 계속하여야 한다.

양돈이나 시설좋은 원예작물 등 선택이 가능하고 자유스러운 산업은 비교적 후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양계산업이 규제를 받게 되면 이는 젊은 양계 후계자들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나 안정법이 정당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이다. 안정법의 골자는 마리수를 정부가 관리하고 허가없이 한마리도 늘릴수 없다

**농외자본을 배경으로한 상사양계
(商社養鷄)의 횡포적 진출은 최근에
와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양계농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로 용서받을 수 없다**

는 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안에는 5만수 이상이라는 선을 긋고 있어 통제 강화는 대규모층에 초점을 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5만수 이하라고 자유로히 마리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류의 법률은 일단 만들어지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층은 항상 약자였기 때문이다.

마리수가 고정되고 양계장의 규모에 따라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남보다 노력하여 수익을 더 올리겠다는 의욕은 없어질 것이다. 근대화된 시설을 이미 하였거나 일정규모에 도달한 양계장은 원가절감이 되어 소규모 경영자와의 격차의 폭만 커질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경영자의 3~4 배를 노력해도 수지가 맞지 않을 때에 젊은이들은 양계산업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양계인들이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신용과 업적을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양계산업은 농외자본의 추방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지 법의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법의 제정으로 양계농가가 원하는 계란가격이 항상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복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한마디도 없다.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으니 알값이 떨어져 생산량을 줄이면 알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법으로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남득이 가지 않는다. 계란값이 오르면 소비는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과잉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을 줄일 때 일시적으로 높은 계란가격을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자나 국민이나 다같이 원하지 않는 바이다.

쌀이나 우유같은 것은 원가 보진책이 있으므로 가격안정과 생산조절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과잉이 제일 많은 쌀도 경작면적의 허가같은 규제가 없는데 유통 소비와 사료산업 등 다른 모든 부분이 자유경쟁의 흐름속에서 유독 생산부문만 법적 강제력에 의하여 묶어 놓았다 하더라도 가격안정에는 하등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일본 농업이 명실공히 근대화 농업으로 발

**법안에는 5만수 이상이라는 선을 긋고 있어
통제강화는 대규모층에 초점을 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5만수 이하라고
자유로히 마리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법률은 일단 만들어지면
눈물 흘리는 층은 항상 약자였기 때문이다**

전하기 위하여는 기업적 경영의 확립이고 이를 위해서 자립경영이 필요한데 경영규모의 결정권을 법에 위임하고 과연 자립경제의 명분이 서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업적 경영의 최첨단을 달리는 양계산업이 이제 원가경쟁을 포기하고 법적보호하에 들어간다고 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기업적 경영도 자립적 경영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양계업에 한하지 않고 타분야에서도 원가 경쟁을 통해서 개개인의 경영체가 어느정도 도태되어 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계는 농외자본의 진출이 용이한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와같이 가혹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이 강해지고 이를 이겨낸 기업적 경영을 실시해온 양계농가와 농외자본을 같이 취급하여 무조건 대규모화하는 것은 나쁘다는 식의 논법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는 자발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고 농외자본의 양계산업 지배를 겨우 막아온 중견 양계농가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법제정을 위한 일련의 운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금할길 없다. 농외자본 또는 대기업의 상식에 벗어난 양계장 확장에 대해서는 양계산업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모두 반대하여 왔지만 안정법 제정은 이와는 별개 문제인 것이다.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안정법도 그중 한가지로 제시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계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가부를 묻는 것은 너무도 문제가 크다. 양계 안정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적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양계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충분한 토론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가부를 묻는 것은 너무도 문제가 크다. 양계안정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양계업계의 적이거나 농외자본의 조직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충분한 논의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지도 방법을 통해서 양계장을 일방적

으로 조사하는 것등은 분명한 입법 반대자에 대한 공갈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법운영에서도 꼭 나타나는 것이라고 걱정한다. 반대자에게는 한평의 확장에도 엄한 법을 적용하여 보복수단을 취한다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감시기구를 설치하여도 항상 정확한 마리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마리라도 많다고 물고 늘어지는 식의 법운영자의 양식에 좌우되는 법률 그 자체가 공평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이웃간의 고발과 상호감시 등으로 업계는 적대시 되고 양계업자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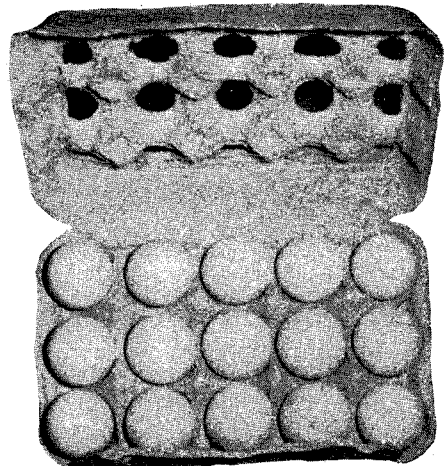
양계안정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찬반 어느 쪽을 부정하는 흑백논리는 아니며, 다만 이번 제시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의문점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는 법안을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이 법안은 더욱 많은 검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 (성남) 43-1042, 41-0171